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절
원산지 규정

제6.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양식이란 특히 정기적인 방류, 급식 또는 천적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한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및 수생식물을 포함한 수생생물을 알, 치어, 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이란 수입된 상품의 가격을 말하며,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점까지의 화물운송 및 보험 비용을 포함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쪽 당사국이 지정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 하나 또는 복수의 정부 당국을 말한다.

수출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공장도가치(ExWorks Value)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국들에서의 제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제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상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될 수 있는 모든 내국세를 공제해야 한다.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

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컨센서스로 인정되거나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받는 그러한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지 여부와 추후 다른 생산 과정에서 재료로 사용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는 재료 또는 생산품을 말한다. 이 장의 목적상, “상품”, “재료” 및 “생산품”이라는 용어는 호환되어 사용될 수 있고 “상품”, “재료” 및 “제품”이라는 용어는 이에 따라 해석된다.

수입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발급 기관이란 이 장에 따라 한쪽 당사국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정하거나 그러한 권한을 주고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 기관을 말한다.

재료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부품, 구성품 또는 하위 조립품을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란 운송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 또는 용기와는 다르다.

특혜관세대우란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반영한 원산지 상품에 부여된 관세 양허를 말한다.

생산자란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란 재료가 세번의 변경이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RVC) 또는 이러한 기준들이 결합된 기준을 충족함을 명시하는 규정을 말한다.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양식, 덫사냥, 수렵, 제조, 생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 획득의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제3국이란 비당사국을 말한다.

제6.2조
원산지 기준

1.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그것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고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제6.3조에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나. 원산지 재료로만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또는

   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이 경우 그 상품은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제6.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6.3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6.2조제1항가호의 목적상, 다음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여겨진다.

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된 후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

다.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라.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마.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바.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그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 그리고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잡힌 그 밖의 생산물. 다만, 그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수역, 해저 및 해저 하부의 천연 자원을 개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사.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잡힌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

아.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가공선박에서 바호 또는 사호에 언급된 생산품만으로 생산되거나 만들어진 상품

자.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이 상품은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어야 한다.

차. 당사국 영역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다만, 그러한 상품은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카.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처분, 부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타. 가호부터 카호까지에 언급된 상품만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6.4조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하 "RVC"라 한다)은 다음의 공식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산정된다.

가. 직접법/집적법

$$\text{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 + \text{직접 노무비} + \text{직접 경비} + \text{이윤}]}{\text{공장도가치}} \text{ X } 100$$

이 경우,

1)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상품의 생산에서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생산한 원산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가치이다.

2) 직접 노무비는 임금, 보수 및 그 밖의 피고용인 수당을 포함한다.

3) 직접 경비는 총 간접비용이다.

또는

나. 간접법/공제법

$$\text{RVC} = \frac{[\text{공장도가치}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공장도가치}} \text{ X } 100$$

비원산지재료가치(VNM)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1) 그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또는

2)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최초로 확인된 가격

제6.5조
특정 상품의 취급

당사국들은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당사국 밖에서 작업되거나 가공된 상품의 취급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고, 그 논의의 개시로부터 3년 내에 그러한 논의를 마친다.

제6.6조
누적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에서 제조되거나 생산되는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그렇게 결합된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제6.7조
불인정 공정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공정이 당사국 영역에서 그 자체로만

또는 결합되어 수행된 경우, 상품은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다. 단순한[1] 세탁, 세척,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사.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제조 공정

아. 단순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자. 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로의 단순한 배치, 카드 또는 판 위에 고정,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생산품 또는 생산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

[1] 이 조의 목적상, “단순”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품의 단순한 혼합[2]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생산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거.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너. 동물의 도살[3]

더.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물 또는 다른 물질로의 단순 희석, 또는

러. 가호부터 더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2.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되었을 때, 제1항에 언급된 것 이상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최초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제6.8조
생산에 사용된 재료

비원산지 재료가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추가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 재료는 후속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할 때 그 재료가 그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제6.9조

---

[2] 이 조의 목적상, "단순 혼합"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않는다.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도살"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 및 저장과 운송을 위한 보존을 목적으로 한 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 또는 훈연과 같은 후속 가공을 말한다.

직접 운송

이 협정에 따라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당사국들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생산품에만 적용된다. 다만, 생산품은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화물의 분리 또는 그 생산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고안된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는 한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생산품은 경유국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머무른다.

제6.10조
최소허용수준

1.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 또는 가치가 그 상품의 총 중량 또는 공장도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가호 및 나호에 명시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한다.

2. 그러나 제1항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RVC 요건을 위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제6.11조

포장과 포장재료의 취급

1.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해석을 위한 통칙 5에 따라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그 상품이 제6.4조에 규정된 RVC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그러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상품의 RVC 산정 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2. 상품의 운송 및 수송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제6.12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1.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의 일부로 여겨지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가.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 그리고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2.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와 안내서는 그 상품의 RVC 산정 시 상품의 재료로 여겨진다.

제6.13조
중립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상품에 결합되지 않을 수 있는 다음의 원산지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도구, 형판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사. 촉매제 및 용제, 그리고

아.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어 그 생산의 일부가 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제6.14조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인지 여부는 각각의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에 의하여, 또는 수출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의 사용을 통하여 결정되며, 그 회계연도 내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